

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박춘희 의원)

의안 번호	43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5월 21일
발의자: 박춘희 의원
찬성자: 심현정, 이은미, 이창열 의원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, 군의회 의사공개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,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제시 (안 제54조제1항 본문 관련)
- 나.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
(안 제54조제7항 신설)
- 다. 실시간 중계 근거를 신설하며 중계 대상 규정 마련 (안 제54조의2 신설)
- 라. 영상회의록 공개 대상 및 공개 기한 등을 규정 (안 제54조의3 신설)
- 마.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제시를 위한 방청 제한 고지 규정 마련
(안 제90조제5항 신설)
- 바. 주민친화 및 탈권위적인 의회 방청 환경 조성을 위해 준수사항 조정
(안 제91조제1항의 제2호와 제5호 삭제)
- 사. 내용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조문 제목 및 내용 일부 조정(안 제92조 관련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임시회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- ⑦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
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 의사진행 과정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여야 한다.

-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
- ③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홍보 및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을 포함해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3(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·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

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

제9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

제91조제1항의 제2호와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92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“녹음 · 녹화 등”

제92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한다.

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 또는 군청출입기자로 한정하여 회의장 안(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)에서의 녹음, 녹화,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4조(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(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. 이 조에서 같다)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삭 제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4조(배부 및 공개) ① 임시회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4조의2(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대상 이외에는 의회 의사진행 과정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③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</p>

특정인의 정치운동 홍보 및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을 포함해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<신 설>

제54조의3(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·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 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

제90조(출입 및 방청제한) ① ~
④ (생략)

<신 설>

제90조(출입 및 방청제한) ① ~
④ (현행과 같음)
⑤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

제91조(준수사항) ①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(생략)
2. 모자,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
3. · 4. (생략)
5. 신문,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
6. ~ 8. (생략)

② (생략)

제92조(중계방송 등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외에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(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)에서 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(이하 “중계방송 등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회의장은 그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.

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

제91조(준수사항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〈삭 제〉
3. · 4. (현행과 같음)
〈삭 제〉

6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92조(녹음·녹화 등)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 또는 군청 출입기자로 한정하여 회의장 안(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)에서의 녹음, 녹화,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.

〈삭 제〉

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·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⑤ 의장은 비공개대상 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의를 중계방송 할 수 있다.

<삭 제>

<삭 제>

【관계법령】

지방자치법

제69조(위원회에서의 방청 등)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75조(회의의 공개 등)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84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97조(방청인의 단속)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·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.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56조(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)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.
-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 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2